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승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31

발 의 년 월 일 : 2024년 05월 27일
발 의 자 : 박승진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성준, 김영철, 박강산, 박칠성, 서준오, 성흠제, 왕정순, 유만희, 유정인, 이원형, 임규호, 홍국표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공원녹지법 시행규칙)에서는 도시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, 장사시설인 묘지는 묘지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음

○ 그러나 국토교통부훈령인 「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」을 준용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묘지가 역사공원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음

○ 이에 「공원녹지법 시행규칙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‘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’에 문화유산인 애국지사, 문화예술인 등의 묘지를 추가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묘지의 역사공원 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에 문화유산을 추가함(안 제5조제4항제5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　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역사성을 보유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(애국지사, 문화예술인 등의 묘지)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) ① ~ ③ (생 략) ④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 략) 5. <신 설>	제5조(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역사성을 보유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(애국지사, 문화예술인 등의 묘지)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)제4항제5호에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에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(애국지사, 문화예술인의 묘지)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☏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